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5. 27 선고 2023가단36085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화

담당변호사 이재용

피 고 B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C

변 론 종 결 2024. 4. 22.

판 결 선 고 2024. 5. 27.

주 문

-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-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80,95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피고는 2022. 7. 18. 주식회사 D와 전자결제 정산대행 약정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따라 E은행 가상계좌번호((계좌번호 1 생략), (계좌번호 2 생략))를 부여하였다.

나. 원고는 2023. 10. 15.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에게 속아 2023. 10. 18. 및 같은 달 24. 2차례에 걸쳐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위 가.항 기재 주식회사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합계 80,950,000원(이하 ‘이 사건 금원’이라 한다)을 송금하였다.

다. 피고는 주식회사 D에게 위 정산대행 약정에 따라 원고가 송금한 이 사건 금원을 포함하여 2023. 10. 24. 358,072,685원 및 같은 달 30. 264,434,130원을 각 지급하였다.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호증,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주장 및 판단

가. 원고는 피고가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이체한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아 그 금전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이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.

나. 살피건대,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·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데,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는바(대법원 2011. 9. 8. 선고

2010다37325,37332 판결 등 참조), 갑 제1,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입금한 돈이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.

오히려 을 제1 내지 4,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, 피고는 가맹점과의 전자결제 정산대행 약정에 따라 가상계좌 제공 및 대금 정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, 이 사건 금원 상당의 금전적 이득은 위 약정에 따라 성명불상자에게 귀속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이재욱